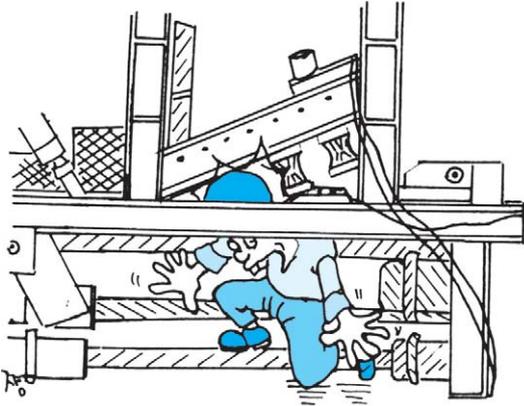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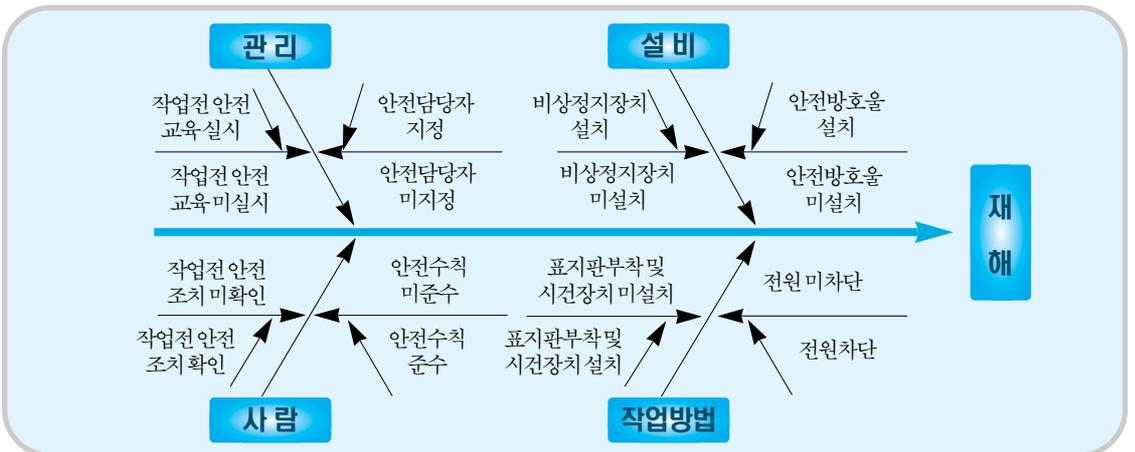
2003년 3월 ○일 11:00분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산업 작업장내에서 열간단조프레스로 가스용기 성형작업을 하던 중 자동송급·취출장치의 롤러가 작동되지 않자 프레스 하부로 들어가 점검하던 중 롤러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롤러와 가스용기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나. 프레스 하단의 개구부 방치
- 다. 표지판 미부착

3. 재해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기계의 정비, 청소, 검사 등의 작업시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표지판 부착, 시건장치 설치, 작업시 휘자를 배치하여야 함.

나. 안전방호울 설치

프레스 하단 개구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안전방호울을 설치하고 안전방호울 제거시 주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의 연동장치를 설치토록 함.

다. 비상정지장치 설치

프레스가 불시에 정지한 경우 작업자가 비상 정지장치를 작동시키면 주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 점검이나 보수작업시 프레스가 불시에 가동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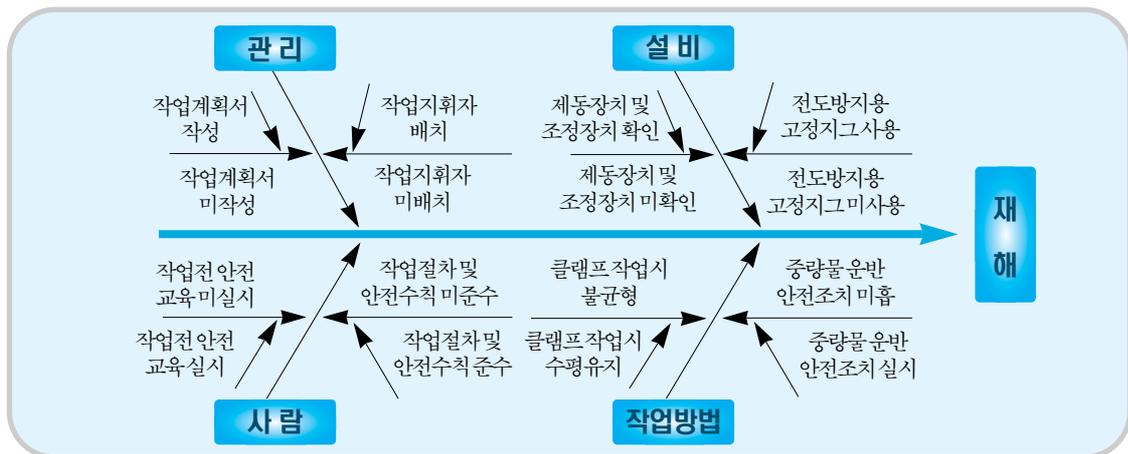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4월○일 16:05분경 충남 연기군 소재 (주)○○교량용 박스제작업체 크로스빔을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고장이 발생하여 포크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크로스빔의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클램프로 지게차 포크 끝부분과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클램프가 조여지면서 기울어져 안쪽에서 작업중이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가. 지게차 정비불량
- 나. 전도위험이 있는 중량물 방치
- 다. 크로스빔 고정작업방법 부적절

3. 재해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지게차 정비 철저
작업시작전 지게차의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여 운행중 지게차가 정지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나. 전도의 위험이 있는 중량물 방치 금지

크로스빔 중량물의 전도 위험이 없도록 전도방지용 고정 지그 등을 사용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사전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작업지휘자 배치

운전자와 작업자 상호 연관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담당자 배치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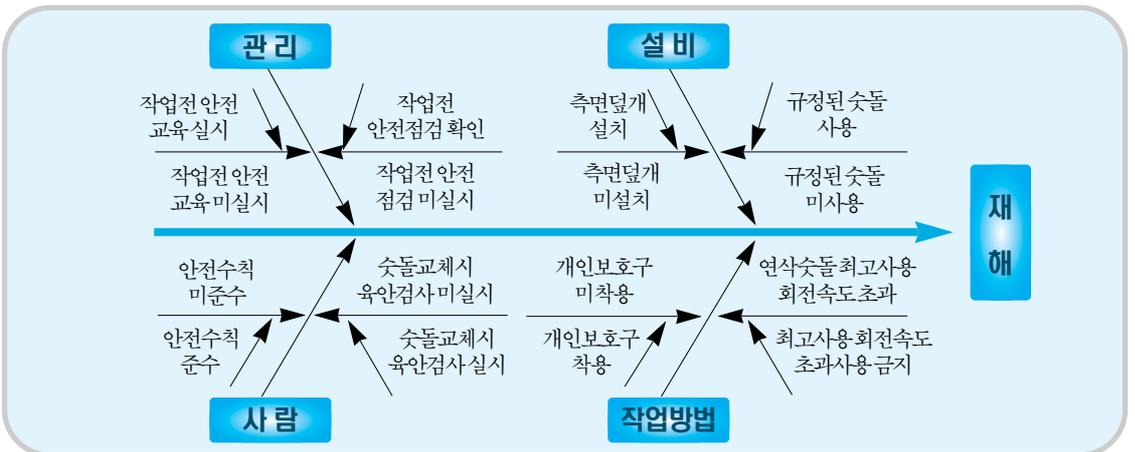
2003년 4월 ○일 11:10분경 제주도소재(주)○○ 축사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철재기둥의 용접부분 절삭작업을 하던 중 용접점이 깊어 연삭숫돌이 닿지 않자 외경이 7인치인 숫돌을 14인치 숫돌로 교체한 후작업하던 중 숫돌이 파괴되면서 숫돌파편이 비래하여 재해자가숨을강타하여 사망한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연삭숫돌 선정의 부적절
- 나.연삭숫돌덮개 미설치
- 다.안전의식 결여

3. 재해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핸드그라인더에 규정된 숫돌사용
 핸드그라인더에 규정된 숫돌을 사용하고 새로운숫돌이나 사용하던 숫돌은 장착하기전에 육안검사 등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함.

나.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 초과사용금지

연삭숫돌의 최고사용회전속도 초과사용을 금지하고 작업시작전 최소한 1분이상 정상속도로 공회전을 실시하여야함.

다. 연삭숫돌 측면덮개 설치

숫돌파손시 파편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측면덮개를 설치하여야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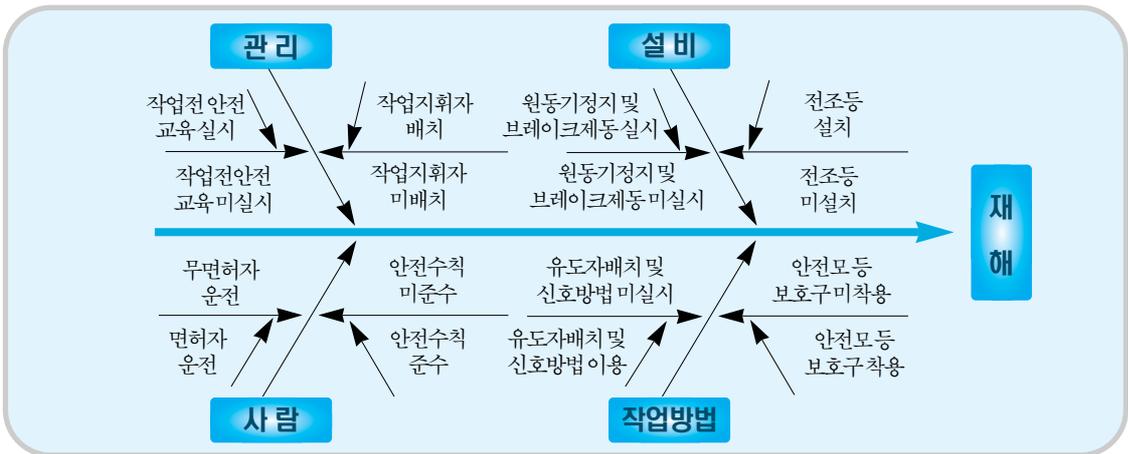
2003년 4월 ○일 22:30분경 충북 충주시 소재 ○산업 채석장 탈수공정에서 작업자 3명이 드럼 워싱기의 타공망 교체작업 중 타공망 고정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굴삭기에 달기되어 있던 타공망이 낙하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 나.무면허자가 굴삭기 운전
- 다.보호구 미착용 및 운전자 복장 불량

3. 재해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철저
굴삭기 운전석 이탈시 버킷은 지면에 내려놓고 원동기는 정지시킨 후 브레이크를 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무면허자 굴삭기 운전금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굴삭기 운전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굴삭기운전을 금지하여야 함.

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중량물 취급 및 고소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낙하 및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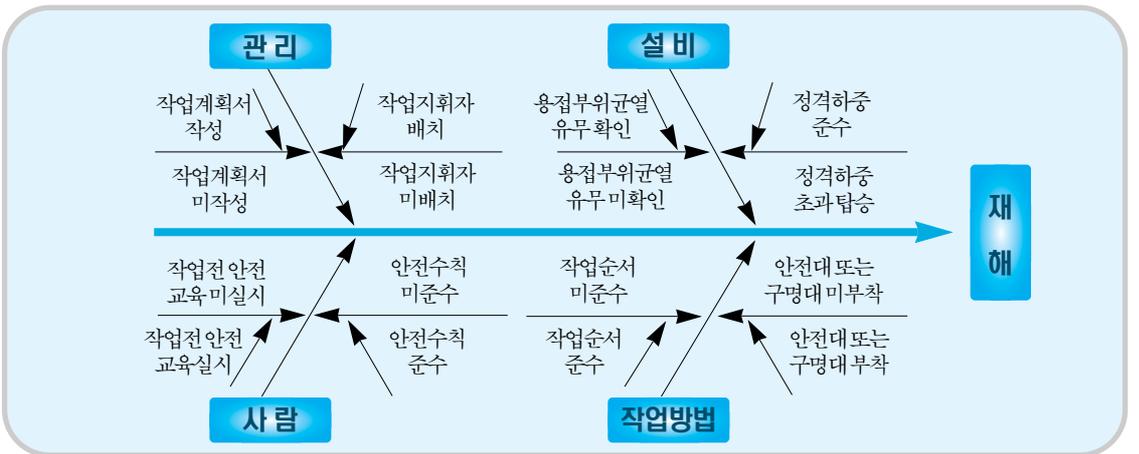
2003년 3월 ○일 11:00분경 서울 성북구 소재 ○조경(주)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위해 카고크레인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중 카고크레인 붐과 용접으로 연결된 작업대의 용접부위가 떨어져 작업대에 있던 피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원인

- 가.작업전 장비 안전점검 미실시
- 나.작업순서 미준수
- 다.보호구 미착용

3. 재해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작업전 장비안전점검 철저
카고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전 작업대의 용접부위 등을 철저히 점검.

나.작업순서 준수 철저

크레인 붐에 연결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대가 나뭇가지에 무리하게 걸리지 않도록 앞쪽부터 안쪽으로 작업순서를 준수하여 작업.

다.보호구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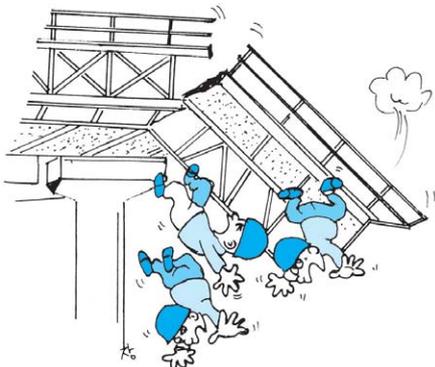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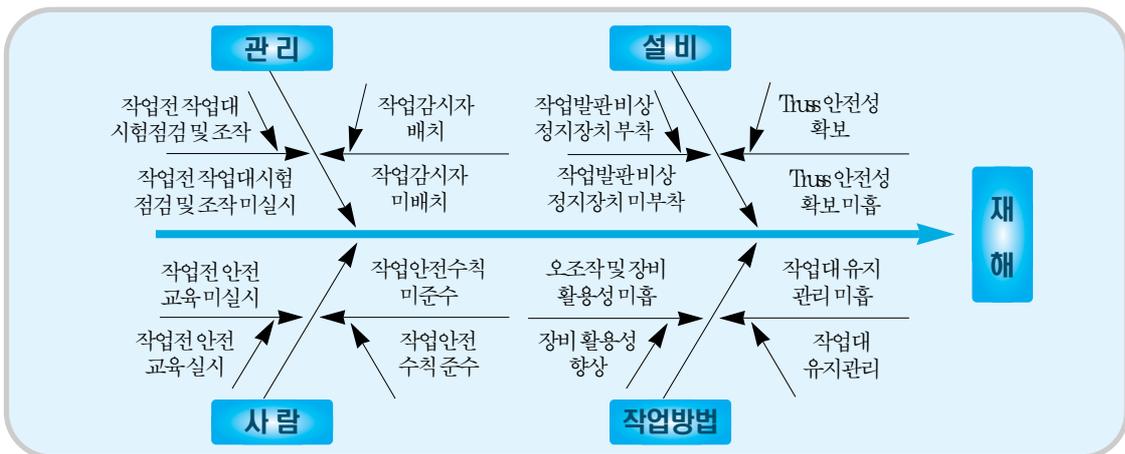
2003년 3월 ○일 15:20분경 경북 영천시 소재 ○건설(주)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슬래브 거푸집 해체를 위하여 작업대를 상승시키던 중 교량 하부에 부딪혀 작업대가 전단되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추락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조작자의 조작실수
- 나. 작업발판에 비상정지장치 미부착
- 다. 트러스구조검토 미흡
- 라. 작업전 작업시설 이상유무 점검 및 안전조치 소홀

3. 재해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 가. 장비조작시 오조작 또는 작업원의 판단 착오방지를 위한 장비활용성 향상
- 나. 작업발판의 비상정지장치 부착 사용
- 다. 구조검토시 작용하중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사전 안전성 확보
- 라. 작업대 사용에 따른 점검, 보수, 보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실시
- 마. 상하작업자간이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 시설 및 연락체계 구축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